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31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

판 결

사 건 2021가단103257 근저당권말소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[redacted]시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1. 6. 10.

판 결 선 고 2021. 7. 8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B은 [redacted]시 [redacted]구 D 전 1,494㎡에 대하여 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등기과 2014. 9. 1. 접수 제789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[redacted]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31

1. 기초사실

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.

가. 원고 소유인 [redacted]시 [redacted]구 D 전 1,494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4. 9. 1. 채권최고액 6,000만 원, 채무자 원고, 채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위 근저당권을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하고, 그 등기를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가 마쳐져 있다.

나. 피고 [redacted]시는 2017. 11. 27.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9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.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요지

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4. 9. 30.경 피고 B에게 현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3,000만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채무를 소멸시켰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, 위 근저당채무가 소멸된 이후인 2017. 11. 29.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[redacted]시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압류의 부기등기를 한 것이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갑 제1,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동공담보로 [redacted]시 [redacted]구 E 하천 514㎡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, 2021. 1. 6. 위 E 하천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'일부포기'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, 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31

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,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6,000만 원인바 실제 채무액이 3,000만 원뿐인지 불분명한 점,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직후 현금으로 3,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변제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6년 이상이 경과하여 2021. 1.에 이르러 공동담보 대상이었던 위 E 하천 514㎡에 대해서만 '일부포기'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된 점,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이 '전'이고 위 하천 부지보다 면적도 3배가량이 되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자인 피고 B이 위 하천 부지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도 근저당권 말소를 인정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,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소멸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[redacted]